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회사관계인에 대한 분식회계 과징금 한도 상향 등 〉
■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96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현정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01. 13.
3. 회 부 일 : 2026. 01.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그 회사의 업무집행자 등 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 관계자의 경우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10%에 불과하여 개인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과징금 부과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어 소액 과징금 부과사건까지 모두 금융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회계부정에 따른 부당이득 박탈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소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5조 및 제38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는 한편(안 제35조제1항 후단), 증권선물위원회에게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5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위법 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u>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u>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5조(과징금) ① ----- ----- ----- ----- ----- ----- ----- ----- ----- ----- ----- ----- ----- <u>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u>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업무의 위탁) ①·② (생략)	제38조(업무의 위탁) ①·② (현행과

현행	개정안
<신설>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 현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회사¹⁾는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제5조²⁾).

□ 한편, 같은 법 제35조³⁾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이하 “분식회계”)한 경우 ① 그 회사에 대하여는 분식회계 금액의 20% 이하 범위에서, ② 회사의 위법행위를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은 회사의 회계처리와 감사인의 회계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⑦ (생략)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4)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회사관계자”)에 대하여는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 이하 범위에서 각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인 과징금의 산정방법을 살펴보면, 과징금 부과금액은 기준 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출한 후 필요시 가감하여 정함.⁵⁾

4)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감사인, 제298조제3항·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제407조제1항·제415조·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6조(과징금의 부과·징수) ① 금융위원회는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장 여부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3.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징수) ①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별표 1] 과징금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

1. 과징금 산정방법

과징금 부과금액은 기준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출한 후 필요 시 가중하거나 감경하여 정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여기서 기준금액이란 ① 회사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공시된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중요성 등을 고려한 금액을, ②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된 사업연도에 회사로부터 받은 일체의 금전적 보상을 의미하며,
- 부과기준율은 위법행위 중요도를 기준으로 하여 ①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2%~20%, ②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50%~500% 범위에서 산정함.⁶⁾

6)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금전적 제재의 부과기준) ①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과징금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

1. 기준금액

- 가. 회사: 공시된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중요성 금액, 연결재무제표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을 고려한 금액
- 나. 회사 관계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된 사업연도에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 배당,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증권·현물 등 일체의 금전적 보상
- 다. 감사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

2. 부과기준율

- 가. 부과기준율은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표에 따라 산정한다.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	부과기준율	
	회사	감사인 및 회사 관계자
2.6 이상	20%	500%
2.4 이상 ~ 2.6 미만	15%	350%
2.2 이상 ~ 2.4 미만	12.5%	300%
2.0 이상 ~ 2.2 미만	10%	250%
1.8 이상 ~ 2.0 미만	7.5%	200%
1.6 이상 ~ 1.8 미만	5%	150%
1.4 이상 ~ 1.6 미만	3.5%	100%
1.4 미만	2%	50%

- 나.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는 다음의 표에 따라 항목별 중요도 점수와 가중치를 곱한 결과값을 모두 합하여 산정(다만,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이 없는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의 경우에는 위반 규모 항목은 합산하지 않는다)한다. 이 경우, 해당 항목의 중요도가 "상(上)" 또는 "중(中)"보다 낮은 경우에는 "하(下)"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점을 매긴다.

[표1]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구 분	산정방식
회사	○ 공시된 재무제표상 분식회계 금액 × 부과기준율(2%~20%) ¹⁾ - (부과한도) 재무제표상 분식회계 금액의 최대 20%
회사관계자	○ 회사로부터의 금전적 보상 등 기준금액 × 부과기준율(50~500%) ¹⁾ - (부과한도)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10%

주1)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 내용, 위반규모, 상장 여부, 시장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요도를 산정하고, 중요도 점수에 따라 부과기준율 결정

(자료: 「외부감사법」 및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재작성)

□ 이와 같이 현행법에서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식회계를 한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 확보를 통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임.⁷⁾

□ 그런데, 회사관계자의 과징금 부과 한도는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10%에 불과하여 분식회계에 개인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계부정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건 중 약 70%⁸⁾의 경우 위반동기와 위반금액 등을 기초로 산출한 과징금이 부과한도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법정 부과한도가

7) 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2헌가6 결정 참조

8) 2022년~2024년 처리건 기준 과징금을 부과한 회사관계자 전체 54명 중 37명(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낮아 부과한도까지만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개인별 책임수준에 맞는 차등적인 과징금 부과가 어려운 실정임.

[표2] 위반행위 가담정도가 다름에도 동일한 과징금 부과 사례

- ◆ (주)D^{비상장}은 고의로 가공의 매출을 계상하였고, 업무집행지시자(최대주주) A 및 담당임원 B가 이 회계처리위반을 주도
- 업무집행지시자 A 및 담당임원 B가 회계부정 사실을 은폐하고 회계정보 접근을 차단함에 따라, 前대표이사 C는 회계부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과징금 부과한도로 인해 A, B, C 모두 동일 과징금 부과

	기본 과징금	한도	최종 과징금
업무집행지시자 A	1.6억원	0.2억원	0.2억원
前대표이사 C	1억원		
담당임원 B	9,900만원		

(자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활성화 및 신뢰 회복을 위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2025. 8.)

- 이에 개정안은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분식회계에 대한 회사관계자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회사의 분식회계를 예방하고, 개인별 책임수준에 맞는 차등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이해관계인의 보호 및 기업의 건전한 경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한편, 개정안 제38조제3항은 금융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현행법 제35조⁹⁾는 회계부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주체를 금융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소액 과징금 부과사건까지 모두 금융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위한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¹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과징금 부과절차를 효율화하여 회계부정에 따른 부당이득을 신속히 박탈하려는 취지임.

□ 현행법상 회계부정을 저지른 회사 또는 회사관계자에 대한 조치¹¹⁾를 증권선물위원회가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5억원

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0)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회계부정 과징금 부과절차상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이후 ① 심의 결과를 반영한 부과안건의 작성, ②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③ 금융위원회의 안건검토 소위 및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가 확정될 때까지 2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1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이 확인된 회사는 제외한다.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이하의 과징금 부과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 입법례¹²⁾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징금 부과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임.¹³⁾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첫째,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하급행정기관¹⁴⁾에 해당하는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3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
2. 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조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는 제외한다.
 - 가.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 나. 1개월 이상의 업무의 전부 정지
 -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3. 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13)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9~2025년 과징금 부과 사건 중 약 80%의 과징금 규모가 10억원 미만에 해당함.

1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1.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2.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3.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 중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된 업무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외부기관에게 업무를 맡기는 ‘위탁’이 아닌 권한의 ‘위임’에 해당하므로, 관련 문구를 “권한의 위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¹⁵⁾

○ 둘째, 개정안은 소액 과징금 부과 등 비교적 경미한 제재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위임 대상 권한의 범위를 별도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입법취지에 비해 위임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자본시장법」에도 개정안과 유사한 방식으로 위임규정을 둔 입법례¹⁶⁾가 존재하기는 하나, 금융위원회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권한배분 구조 측면에서 그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현행 「외부감사법」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권한으로 과징금 부과 외에도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제5조¹⁷⁾)¹⁸⁾, 상장회

15) 위임은 원 권한자의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하급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휘·감독 하에 있는 행정기관 등에 맡기는 것을 말하며, 위탁은 원 권한자로부터 독립된 다른 행정기관 등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2024. 5., p.725.)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

사 감사인의 등록 및 등록취소(제9조의2¹⁹), 회계감사기준 사전승인(제16조²⁰), 품질관리기준 사전승인(제17조²¹)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소액 과징금 부과 등 경미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것이라면, 위임 대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과징금 부과 업무 등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하거나 위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8) 다만, 이 업무는 현행법 제5조제4호 및 현행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 위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1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사인이 같은 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 수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감사인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회계감사기준) ② 제1항의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다.

2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품질관리기준) ② 품질관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절차,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 감사업무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다.

문 의 처
02)6788-5111